

1981

통 계 조 사 지 침

제 3 권

소매 물가조사

006108

차 례

1. 물가조사의 의의	3
2. 조사품목	6
3. 품질규격 및 단위	7
가. 품질규격	7
나. 품질규격 변경	7
다. 단 위	8
4. 조사지역 및 대상처	9
가. 조사지역	9
나. 대상처	9
다. 대상처 선정기준	9
라. 보조대상처	10
마. 대상처 변경	10
5. 조사시점	11
6. 조사방법	11
7. 조사요령	12
8. 품질품목처리	12
9. 조사표류 기입요령	13
가. 소매물가 조사표	13
나. 영화관람료 조사표	15
다. 방세 조사표	16

라. 납입금 확인서	17
10. 조사표류 발송	18
가. 조사표 발송	18
나. 질의 조회 응신	18
11. 명부 작성	19
가. 가격 조사부	19
나. 대상처 명부	19
부 록	21
I . 품목 및 품질규격	21
II . 조사상 문제품목의 참고사항	46

1. 물가조사의 의의

오늘날의 교환경제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치는 화폐로서 표시되고 있다. 화폐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구매력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화폐의 구매력이라 함은 화폐 한 단위가 교환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물자와 서비스의 수량을 의미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일차적으로는 단일상품의 가격에 의하여 측정할 수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일체의 상품의 가격을 종합함으로써 올바르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하여 특정의 개별상품의 가치를 화폐단위로서 표시된 것을 그 상품의 가격이라 하고 국민경제 내부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것을 물가 또는 물가수준이라 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수준의 역수로서 표현되고 화폐의 구매력의 변동은 물가수준의 변동에 의하여 판정된다. 이러한 물가수준의 변동은 물가지수로서 표시 되는데, 물가지수는 일정시점의 물가를 기준 (= 100) 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물가를 백분율로서 표시한 것이다.

화폐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는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실질소득은 변동하게 된다.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화폐의 구매력 감퇴에 의하여 국민경제생활은 궁핍하게 되고 반대로 물가지수가 하락하면 화폐의 구매력은 증가하여 국민경제생활은 풍족하게 된다. 결국 화폐소득에 대응하는 물가수준의 변동은 국민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격은 상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거래단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

매가격과 소매가격으로 구분되고 종합적으로는 도매물가와 소매물가로 구별된다. 도매가격이란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매 상에 이르는 단계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며 거래단계별로 몇개의 도매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생산자로부터 도매 상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소매 상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출하고 있는 도매물가지수를 위한 가격자료로 쓰고 있는 도매가격은 제1단계의 거래에서 집약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Primary market price) 을 의미한다. 소매가격은 거래의 최종단계에서 소매 상이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유통구조가 선진국과 같이 근대화되어 있고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제1차 도매가격에서 최종 소매가격에 이르는 유통과정이 짧아지고 유통마진은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 물가는 안정되며,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나, 반대로 오늘날과 같이 유통구조가 복잡 내지 무질서한 경우에는 거래단계별 가격질서가 문란하여 단계적 물가수준의 변동은 정확히 포착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그만큼 국민경제생활도 불안정하게 된다.

한편 소매물가와와는 개념상 비슷한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들 수 있다.

소비자물가는 소비자가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매 상으로부터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과 서어비스 요금이 종합된 것으로서 직접 가계에서 지출한 수량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차이는 전자가 소매 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음에 반하여 후자는 서어비스 요금을 포함하여 실제로 소비자가 가계 소비지출 제정에서 상품구입을 위하여 지불하는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기계류등을 위시한 완전생산재에 있어서는 소매가격은 형성되나 가계에서 구입하는 소비자 가격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한편 서어비스 요금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결국 소매물가는 유통단계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고 소비자 물가는 가계소비지출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 편제상의 실제적 필요에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제, 공표하고 있는 서울 및 전도시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용되는 가격자료는 소매가격 및 서어비스 요금인바, 여기서 말하는 소매가격은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훗가)이 아니고 소매상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과 서어비스 요금을 의미하고 그것은 개념상 소비자 가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수 편제에 있어서는 동일의 가격계열이 요구되는데, 소비자 구입가격만을 추적한다는 것은 동일 가구안에서의 소비지출의 품목과 구성비가 시계열 선상에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조사기술면에 있어서도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계속적으로 정확한 가격 자료를 얻을 수 없으므로, 소매상의 판매가격과 소비자의 구입가격은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서 편의상 소매가격을 포착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편제의 가격자료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소매가격자료는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상의 소비자물가에 접근하는 가격으로 조사 수집된 것이라야 한다.

현재 공표되고 있는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975년 기준의 지수 개편으로 가격의 비교기준과 가중치의 기준을 1970년에서 1975

년도로 변경하였고, 조사품목도 338개 품목에서 349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조사지역도 서울을 비롯한 32개 도시에서 성남, 부천, 안양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35개 도시로 확대되어 약 4,100여개의 대상처에서 가격을 수집하게 되었다.

2. 조사품목

도시가계 지출중 비중이 큰 품목으로서 지출구성비가 $\frac{1}{10,000}$ 이상되며 가격변동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349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도시별 조사 품목수

도	시	총품목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전	도	349	131	60	7	57	94
서	울	348	131	60	7	57	93
부	산	349	131	60	7	57	94
대	구	348	131	60	7	57	93
인	천	347	130	60	7	57	93
대	전	345	130	60	6	57	92
광	주	345	130	59	6	57	93
전	주	344	130	59	6	57	92
출	천	341	130	57	6	57	91
청	주	341	130	57	6	57	91
기	타	339	129	56	6	57	91

3. 품질규격 및 단위

가. 품질규격

1) 가격 제열의 동일성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품목별 조사 가격의 결정적 요소인 품질규격을 확정시켜 계속적으로 동일한 품질규격에 의한 가격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상품의 질, 크기, 무게, 모양, 생산지, 상표등 그 상품의 가격이 다양하므로 단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품질규격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규격

나)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규격

다) 생산량이 많은 규격

라) 시장출회량이 많은 규격

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규격

바) 조사 지역별로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량출회 소비되는 규격으로 상표를 지정한다.

나. 품질규격 변경

이미 지정된 품질규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 “품질규격 변동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하고 신, 구 품질규격의 가격을 3회 조사보고하여 별단의 지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고 계속 신가격으로 조사한다.

- 1)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 2) 생산양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 (비닐봉지 제품이 캔 포장으로 된 경우)
- 3) 출회가 적어 가격의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 4) 소비자 수요가 극소한 경우
- 5) 거래단위의 관습이 달라지는 경우
 예 (국수가 1근으로 거래되던 것이 1kg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단 위

소비자의 구매관습에 따라 일반적으로 거래 단위를 책정한 것이며 전국적으로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통일하였으나 거래 단위가 상이한 지역은 규정된 단위로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예

- 1) 600g으로 책정된 쇠고기 1근을 375g으로 판매하는 지역에서는 600g으로 환산한 가격을 조사 기입한다.
- 2) 콩치의 단위가 10마리인데 6마리에 100원으로 거래된다면 환산하여 167원으로 조사 기입하여야 한다.

4. 조사지역 및 대상처

가. 조사지역

서울을 비롯한 35 개시

나. 대상처

조사대상 전품목을 조사할 수 있는 점포 또는 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속 조사하여야 한다.

다. 대상처 선정기준

- 1) 소비자 고객의 출입이 가장 많은 소매점포로서 가격의 대표성이 높고 계속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점포
- 2) 타조사원과 중복된 점포는 제외하여야 한다.
- 3) 하나의 시장에 국한하지 말고 조사구역내에서 대표적 점포를 선정한다.
- 4) 다음과 같은 점포는 조사대상처가 될 수 없다.
 - 가) 도매점포
 - 나) 도산매 점포로서 도매를 주로하는 점포
 - 다) 통신 판매점
 - 라) 중고품 판매점
 - 마) 영업상태가 불량한 점포
 - 바) 중앙에서 지정하지 않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라. 보조 대상처

보조대상처는 지정된 대상처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격조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대상점포의 특별한 사유로 이상가격이 형성되는 경우에 참고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정대상처 외에 몇 개의 보조 대상처를 정하여 활용한다.

- 1)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이 일시 품질일 때
- 2)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의 품질규격이 달라졌을 때
- 3) 지정된 대상처의 일시 휴업

마. 대상처 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처 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에 송부하고 신규가격을 3회 보고하여 별단의 지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 1) 조사대상처가 폐업하는 경우
- 2) 조사대상처가 전업하는 경우
- 3) 조사품목을 취급하지 않게 된 경우
- 4) 조사대상처의 상호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 5) 조사대상처가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등인데 신규대상처의 선정은 대상처의 선정기준에 의함은 물론 지도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5. 조사시점

가. 순기별 조사

(매월 5, 15, 25일) : (영화관람료, 납입금, 방세를 제외한 337 품목)

나. 월별조사

(매월 5일) : 영화관람료 (2 품목)

다. 분기별 조사

(매분기 말월 5일) : 납입금, 방세 (10 품목)

조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조사일 전일에 조사하고 조사일이 명절(추석, 성탄절등)인 경우에는 2일 전에 조사하되 앞당긴 조사일이 휴사일, 공휴일이면 다시 1일 전에 조사한다.

“예”

- 1) 5일이 휴일이면 4일에 조사하고 4일이 명절이면 2일에 조사한다.
- 2) 25일이 명절이면 23일에 조사하고 23일이 휴일이면 22일에 조사한다.

6. 조사방법

타계식 면접조사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조사한다.

7. 조사요령

소매물가조사는 면접조사이므로 응답자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본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다만, 통계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납득시켜 응답자로 하여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격을 알려 주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정한 응답자를 상대로 가격을 조사한다.

나. 각 매스컴을 통하여 사전에 물가에 관한 충분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항상 조사구내의 상황에 밝아야 한다.

라. 품질규격을 숙지함은 물론 유사품종에 대하여도 많은 지식을 갖는다.

8. 품질 품목처리

다음의 경우에만 품질로 처리한다.

가. 계절적으로 완전히 시장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나. 생산이 중단되어 재고량이 품질되고, 신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품질 처리하여서는 안되며 대상처에서 일시 품질일 때는 조사구내의 타점포에서 조사하여 등락이 있을 때는 본 대상처의 전순가격에 등락률을 적용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비교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예 갈치 값이 전기에 100원이었고 금기에 품질인 경우 보조대 상처에서 조사하여 동일규격이 120원이고 이 점포의 가격이 전기와 변동이 없다면 같은 100원으로 기입한다.

그러나 전기의 100원에서 120원이 되었다면 같은 추세로 보아 120원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본규격과 (70cm) 다른 규격의 갈치 (90cm) 만 출회되고 있을 때 전기 기본규격이 100원이고 90cm의 가격이 150원이었는데 금기가격도 150원이라면 금기조사 가격은 100원이다. 그러나 금기 90cm가격이 180원이라면 등귀비율이 같다고 보아 $(100원 \times \frac{180}{150} = 120)$ 120원이 금기 가격이다.

9.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소매 물가조사표

- 1) 조사가 끝나면 가격원부에 의하여 가격을 이기하고 등락차액은 하락일 경우에만 차액앞에 △표를 하고 등락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 2) 환산가격을 기입할 때는 원미만은 반올림하여 기입하고 그 내용을 비교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 3) 조사표의 숫자는 숫자란의 높정도 크기로 아랫부분에 기입하고 정정할 때는 지우지 말고 두줄로 횡선을 긋고 날인한다.

2	3	5	6		△	2	0
						2	5

4) 전국적으로 단일가격이 형성되는 전기료, 담배 등 31개
 증양조사품목(비고란 ☆표)은 물가통제과에서 직접 조
 사하므로 조사표에 가격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5) 해당 도시에서 조사되지 않는 품목은 반드시 사선을 긋는
 다.

< 조사표 I >

품목번호	품목명	단 위	전순가격	금순가격	차 액	등락 사유
30202	가스	10kg				

< 조사표 II >

품목번호	품목명	단 위	전월 25	5	15	25	등락 사유
30202	가스	10kg					

- 6) 조사표가 작성되었으면 누락 또는 오기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게 재검토하여야 한다.
- 7) 맨 후면의 물가 동향란에는 시황과 물가동향 및 기타 참고사
 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나. 영화관람료 조사표

- 1) 극장명을 기입하고 개봉, 재개봉별로 해당란에 명기한다.
- 2) 품질규격에 맞는 영화명만을 기입하며 대작이나 흑백영화, 쇼
 는 제외한다.
- 3) 방화와 의화를 명확히 구별하여 금액을 기록하며 특히 합작
 영화는 방화로 기록하여야 한다.
- 4) 상영일자에 중복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한다.
- 5)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영화요금 (입장세 포함) 이외에
 각종 구호금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그것이 포함되었으면
 제외시킨다.
- 6) 1매의 조사표에 연기하여 조사한다.

다. 방세 조사표

- 1) 조사구 번호와 조사가구번호를 기입하고 반드시 가구주 성

기입한다.

2) 품질규격에 맞는 것만을 조사하며 방이 틀이거나 점포가 부설된 것을 제외시킨다.

3) 보증금과 매월 지불액란의 전기가격의 착오가 없도록 대조 확인하여 기록한다.

4) 전분기와 금분기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등락사유(새로 전입 또는 수리 등)를 명백히 기입한다.

5) 삭월세의 경우 보증금 잔액은 매월 지불액의 3배를 제한 금액임을 명심하여 정확히 기록토록 한다.

예컨대 50,000원 보증금에 5,000원의 삭월세(10개월)인 경우 다음 분기에는 보증금이 35,000원이 된다.

6) 세의 종류가 동일가구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히 전분기 가격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예컨대 전분기에는 200,000원 전세로 있다가 금분기에 100,000원 보증금에 매월 5,000원씩 지불하는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에는 전세의 보증금란에 200,000원, 금분기에는 보증부월세의 보증금란에 100,000원 매월 지불액란에 5,000원을 각각 기록하고 그 변경사유를 등락사유란에 명백히 기재한다.

7) 대상가구를 조사원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라. 납입금 확인서

- 1)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하되 반드시 학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 2) 국민학교 육성회비는 월별로 징수를 하지만 분기별 조사이므로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록한다.
- 3) 중, 고등학교의 납입금은 반드시 2학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4) 대학교 납입금은 자율적 경비의 내용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시점마다 그 내역의 추가 또는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과계(국문과 우선) 3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조사표류 발송

가. 조사표 발송

조사원은 조사시점 현재로 가격조사가 끝나면 도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즉시 조사표를 중앙에 우송하여야 한다. 가격보고는 신속을 요하므로 조사원의 일신상 사유로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유고시에는 도사무소장은 즉시 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표Ⅰ 해당도시는 월 3회, 조사표Ⅱ 해당도시는 월 1회보고)

나. 질의조회 응신

- 1) 전화에 의한 질의나 질의조회 응신서를 접수하면 접수 즉시 내용에 따라 재조사한다.
- 2) 질의조회, 응신기일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Ⅱ. 명부 작성

가. 가격조사부 (가격원부)

조사원은 우선적으로 가격조사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이를 휴대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품질규격 및 대상처 또는 지정상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중앙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으면 즉시 가격조사부를 정정 기입하여 조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상처 명부

1) 조사대상처 명부

서식에 의거 명부를 작성하되 품목수의 합계가 당해 조사구의 조사품목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2) 품목별 대상처 명부

조사표상의 품목순서대로 기입하되 당해 조사구에서 조사하는 품목만 기입하므로 대상처별 명부의 품목총수 및 대상처수는 일치되어야 한다. 대상처 명부는 2부 작성하여 1부는 중앙에 송부하고 1부는 사무실에 비치한다.

I. 품목 및 품질규격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10101	일 반 미	정미, 중품	8 kg	
10102	간 일 미	정부방출미	8 kg	☆
10103	혼 합 미	정부방출미	8 kg	☆
10104	참 쌀	정 미	8 kg	
10105	보 리 쌀	쌀보리	7.65 kg	
10106	밀	참 밀	7.5 kg	
10107	콩	백 태	7.5 kg	
10108	팥	적 두	8.33 kg	
10109	녹 두	흑갈색	8.33 kg	
10110	좁 쌀	차 조	7.89 kg	
10111	수 수 쌀	차수수	7.83 kg	
10112	밀 가 루	중력분, 2등급, 제분율 77%, 22kg들이 (상표지정)	1 포	
10201	쇠 고 기	정 육	600 g	
10202	패 지 고 기	정 육	600 g	
10203	닭 고 기	육제 잡아서 털뽑은것 내장제거 1 마리 정도	1 kg	
10301	조 기	생선길이 30cm (우)	1 마리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10302	갈 치	생선몸길이 70 cm정도	1 마리	
10303	생 명 태	생선길이 45 cm 정도 (우)	"	
10304	고 등 어	생선길이 35 cm 정도	"	
10305	꽂 치	생선길이 30 cm 정도	10 마리	
10306	가 자 미	생선길이 30 cm정도, 폭 15cm정도	1 마리	
10307	대 구	생선길이 65 cm, 3.5 kg 정도	"	
10308	병 어	생선길이 25 cm 정도	"	
10309	물오징어	생선 몸길이 25 cm 정도	10 마리	
10310	굴	싱싱한 것	375 g	
10311	조 개	점질잔것, 싱싱한 것	"	
10401	굴 비	길이 30 cm 정도, 10 마리	1 두름	
10402	마른멸치	황백색 길이 5 cm 정도	375 g	
10403	마른오징어	몸길이 25 cm정도 (주문진산)	20 마리	
10404	북 어	황태길이 40 cm 정도	1 마리	
10405	새 우 젓	추 젓	375 g	
10406	멸 치 젓	완전히 삭은 것	"	
10501	달 갈	흰색, 개당 50 g 정도	10개	
10502	분 유	서울분유 450 g들이	1 통	
10503	연 유	서울연유 397 g들이	"	
10504	목 장우유	각지방 우유협동조합제품 180cc 들이 (교정배달)	1 병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10505	버 터	서울버터 453 g	1 개	
10601	무 우	재래종, 잎없는 것 3 개정도	3.75 kg	
10602	배 추	호배추	"	
10603	양 배 추	겉껍질 벗긴 것	"	
10604	파	개량파, 머리둘레 3 cm정도	"	
10605	양 파	3 개정도	375 g	
10606	시 금 치	신선한 것	"	
10607	콩 나 물	길이 5 cm정도	"	
10608	상 치	잎 상치	"	
10609	당 근	2 개정도	"	
10610	오 이	개량종, 애오이, 길이 25 cm정도 (개당 120 g정도)	10개	
10611	호 박	애호박 600 g정도	1 개	
10612	가 지	길이 25 cm정도	10개	
10613	도 마 도	2 개 정도	375 g	
10614	감 자	흰색 25 개 정도	3.75 kg	
10615	고 구 마	15 개 정도	"	
10616	도 라 지	껍질벗겨 조건 것, 싱싱한 것	375 g	
10701	김	개량김, 검정색	10장	
10702	미 역	단각(중품: 15 cm x 75 cm정도) (상표지정)	1 장	

품목번호	품목별	품 질 규 격	단 위	비 고
10703	다 시 마	말린 것	375 g	
10801	고 추	재래종, 완전히 마른 것	600 g	
10802	고 추 가 루	중 가 루	100 g	
10803	마 늘	마른 것, 직경 5 cm 정도	1 접	
10804	천 일 염	국산 1 등 염 (고 봉)	2 l	
10805	재 제 염	국산, 고운소금 (고 봉)	2 l	
10806	참 깨	흰 색	1 l	
10807	참 기 림	공장제품	0.18 l	
10808	채 종 유	유채유	"	
10809	콩 기 림	해표 (동방유량), 플라스틱병 900 ml 들이 (KS 표시품)	1 병	
10810	들 기 림	공장제품	0.18 l	
10811	설 탕	백설표 (제일제당) 비닐포장 500 g 들이 (KS 표시품)	1 포	
10812	구 루 타 민 산 소 다	해산 복합조미료미원 (신선로표) 비닐포장 500 g 들이	1 포	
10813	간 장	샘표 (진간장) 900 ml 들이	1 병	
10814	고 추 장	비닐포장 200 g (상표지정)	1 통	
10815	된 장	비닐포장 500 g (상표지정)	1 포	
10816	생 강	10개 정도	375 g	
10817	식 초	화영식초, 유리병 100 ml 들이	1 병	
10818	후 촛 가 루	캔포장 100 g 들이 (상표지정)	1 통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10901	두 부	150 g 정도 (공장제품)	1 모	
10902	라 면	삼양 쇠고기라면, 120 g 들어	1 봉	
10903	국 수	공장제품	375 g	
10904	달 면	순죽말	375 g	
10905	달 무 지	왜무우	375 g	
10906	마아가린	소머리표 (서울스노우 마아가린) 225 g 들어	1 개	
10907	소시지	진주 참맛 소시지 (진주제품) 비닐포장 110 g 들어	1 개	
10908	생선통조림	꽂치통조림, 425 g 들어 (상표지정)	1 통	
10909	과실통조림	복숭아통조림, 425 g 들어 (상표지정)	1 통	
11001	홍 옥	개당 180 g 정도	10 개	
11002	국 광	개당 200 g 정도	10 개	
11003	떡	개당 450 g 정도	10 개	
11004	복숭아	떡도, 개당 250 g 들어	10 개	
11005	포도	흑갈색	375 g	
11006	감	홍시, 개당 150 g 들어	10 개	
11007	꽃 감	꽃이당 10개	1 꽃이	
11008	밤	굵은 것 (코봉)	1 개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11009	밀 감	제주산, 개당 100g 정도	1 개	
11010	바 나 나	수 입 품	375 g	
11011	참 의	은천참의 (나이론 참의) 개당 600g 정도	10개	
11012	수 박	개당 5kg 정도	1 개	
11013	딸 기	개 량 중	375 g	
11101	크 림 빵	삼립사과보름달 60g	1 개	
11102	식 빵	삼립하늬식빵 590g (비닐포장)	"	
11103	카스텔라	콘티 뉴카스텔라 80g (비닐포장)	"	
11104	건 빵	100g 들이 (상표지정)	1 봉	
11105	드 롱 스	롯데 청포도사탕 130g	"	
11106	비 스 켓	오리온 만만 비스켓 100g 들이	"	
11107	셴 베 이	보 통 품	375 g	
11108	카 라 멜	롯데 하이소프트 밀크카라멜 10개 40g	1 봉	
11109	초 코 렛	해태 나하나 초코렛 25g	1 개	
11110	검	롯데 쥬시후레쉬 (6개)	1 갑	
11111	크 랙 카	오리온 크랙카 (동양제과) 55g	1 봉	
11112	떡	인 절 미	600 g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11113	망 공	볶은것, 속껍질 있는것 (고봉)	1ℓ	
11114	아이스크림	해태 부라보콘 100cc	1개	
11115	아이스캔디	대일유업 키스파 80cc	1개	
11201	콜 라	코카콜라 355ml들이	1병	
11202	사 이 다	칠성사이다 340ml들이	1병	
11203	쥬 스	환타 355ml들이	1병	
11204	코 오 피	다방 판매품	1잔	
11205	홍 차	다방 판매품	1잔	
11206	밀 크	다방 판매품	1잔	
11207	유산균음료	야쿠르트 65ml들이 고정배달	1병	
11301	맥 주	오비 500ml들이	1병	
11302	소 주	진로 25도 360ml들이	1병	
11303	청 주	백화수복 특급 1,800ml들이	1병	
11304	약 주	주류 판매점 판매품	2ℓ	
11305	탁 주	주류 판매점 판매품, 프라스틱용기 1ℓ들이	1병	
11306	포 도 주	진로포도주 335ml들이	1병	
11401	실 링 탕	1급 대중식당	1그릇	
11402	냉 면	1급 대중식당	"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11403	비빔밥	1급 대중식당	1그릇	
11404	짜장면	1급 중화요리점	"	
11405	우동	1급 중화요리점	"	
11406	잡뽕	1급 중화요리점	"	
11407	오무라이스	1급 대중식당	"	
20101	방세(전세)	적벽돌 또는 목조 기와집 (콘크리트집포함) 부엌있는 온돌방 1개	※	
20102	방세(월세)	"	1개월	
20201	도배지	그라비아 벽지 53 cm × 12.5 cm (2평), 3색도 (상표지정)	1필	
20202	창호지	전주산, 기계지, 표백 (20장)	1권	
20203	비닐장판지	럭키 비닐제품 8자방 1칸용 럭키하이젯트 2mm, 137 cm × 485 cm	1장	
20204	종이장판지	황색 4배지 105 cm × 90 cm 정도 (전주산)	1장	
20205	시멘트	일반용 40kg들이 (상표지정)	1포	
20206	판유리	한국유리공업제품 투명, 두께 3mm (1평)	918㎡	
20207	페인트	제비표 (건설화학제품), 흰색, 유광, 외부용 1급품 4ℓ들이	1통	
20208	합석	별표 (일신산업) # 31 (두께 0.23mm) 90.9 cm × 181.8 cm 평판	1장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20209	스레이트	한국스레이트제품 두께 6.5 cm 72.72 cm × 181.8 cm 석면, 소골 (11.5) (KS표시품)	1 장	
20210	합 판	나왕합판 121.2 cm × 242.4 cm (4자 × 8자) 두께 4 mm	1 장	
20211	벽 돌	적벽돌 21 cm × 6 cm × 9 cm	10 장	
20212	기 와	시멘트제품, 검정색 30.3 cm × 30.3 cm	10 장	
20301	은 수 저	성인용 70% 은, 무게 75 g 정도 젓가락포함, 단순무늬	1 벌	
20302	스테인레스 수 저	성인용, 프레스제품, 젓가락포함 단순무늬	1 벌	
20303	주 발	스테인레스제품 성인남자용, 대 접포함, 단순무늬, 두께 1.5 mm (상표지정)	1 벌	
20304	양 은 솔	직경 30 cm 두경포함 (상표지정)	1 개	
20305	남 비	황색 알마이트프레스제품, 직경 18 cm (상표지정)	1 개	
20306	접 시	직경 20 cm 무늬단조 (상표지정)	1 개	
20307	컵	보통품, 유리제품, 1 홈 7 작들이 8 개 (상표지정)	1 조	
20308	주 전 자	선학표, 황색 알마이트프레스제품 2 ℓ 들이 (KS 표시품)	1 개	
20309	후라이 팬	법랑제품, 직경 25 cm 정도	1 개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20310	코오피셋트	행남사, 로젠탈산 포도무늬, 증조 (유색 14pes)	1 조	
20311	버 키트	프라스틱제품 15ℓ들이 뚜껑 포함 (상표지정)	1 개	
20312	항 아 리	오지, 유광, 손잡이 달린 것, 뚜껑제의 40ℓ들이	"	
20313	세숫대야	프라스틱제품, 직경 35cm (상 표지정)	"	
30314	밥 상	자개상 (홍패, 민무늬) 피나무 45cm×60cm×28cm	"	
20315	거 울	45.5cm×90.9cm (유리크기), 호마이카테 (폭 5cm, 두께 2cm) 유리두께 2mm	"	
20316	탁 상시 제	세이코 (한국시제 제품), 코로나 형 (원형)	"	
20317	벽 시 제	" PMC 837형	"	
20318	전기다리미	금성사제품 EI-8020F 자동열조정장치 AC 100V	"	
20319	백 열 등	투명 110V-30W 일반조명용 (상표지정)	"	
20320	형 광 등	번개표, 주광색, 갖제의 20W, 일반조명용 (KS표시품)	"	
20321	채 상	철강제품, 외소매채상, 윗설합1개, 편측설합 2개, 1,065mm(W)× 760mm(D)×750mm(H) (상표지정)	"	

품질 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20322	의 자	평의자 (철제제품, 팔걸이 및 컷 손있는 것) 높이 45 cm	1 개	
20323	자 전 거	3,000리호 표준형 (26인치), 라이트와 거울부착	1 대	
20401	텔레비전 수상기	금성사제품, VF550형, 35.56 cm (14인치) 220V겸용	"	
20402	선 풍 기	금성사제품 FD351HB형 35.56 cm (14인치) (110V, 220V겸용)	"	
20403	냉 장 고	삼성하이콜드 SR 189TD, 180ℓ	"	
20404	라 디 오	금성사제품, RF1011형 휴대용 (전전지용) FM겸용	"	
20405	전 축	별표모델 - 1100C	"	
20406	녹 음 기	금성사제품 모델 TCM609, 휴대용	"	
20407	딕 서	금성사제품 M-1203형	1 개	
20408	피아노	삼익피아노, 호루겔 WG-9 (전반 88개)	1 대	
20409	캐 비 넬	한국제품, 철강제양부장, 양문, 안설합 2개 (페인트 도장) 177 cm × 96 cm × 59 cm	1 개	
20410	제 봉 틀	드레스미싱, MSBD형, 캐비넬형 (무광)	1 대	
20411	난 로	한일전기(주)제품, 한일 OH-45	"	
20412	곤 로	석유용량 4.2 ℓ (상표지정)	"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20413	전 화 기	M - 70형 다이알식, 흑색	1 대	
20501	수 도 료	가정용전용 전월간 기본요금포함 서울, 부산 (30 t), 대구, 인천, 대전, 광주 (25 t), 그외 (20 t)	※	
20601	오물수거비	일반가정, 1 등급	1 개월	
20602	인분제거비	일반가정, 18 ℓ 들이	1 통	
20603	숙박료(호텔)	2 급, 독방, 침대, 1인1박, 독탕 부설, 식사제외	1 일	
20604	숙박료(여관)	잡류, 1인1박, 독방, 식사제외	1 일	
20605	전 공 임	숙련공 급식제외	1 일	
20606	목 수 임	" "	1 일	
20607	미 장 이 임	" "	1 일	
20608	칠 장 이 임	" "	1 일	
20609	잡 부 임	급식제외	1 일	
30101	전 기 료	가정용(기본요금 및 세금포함)	30KWH	☆
30201	연 탄	소형 22공탄 직매점 판매가격 (배달료제외) (상표지정)	10 개	
30202	가 스	유공 제품, 가정용, 프로판가스 (배달료와 통값제외)	10 kg	
30203	숯	참나무, 숯, 흑탄	100 ♯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30204	석 유	유공제품, 등유	2ℓ	
30301	성 냥	가정용 대형 8각형 750~800 개피 들이 (상표지정)	1통	
30302	양 초	6개들이, 갑당 300g 정도 (상 표지정)	1갑	
40101	마춤신사복 (여름용)	제일모직, 트로피칼 (울 40%, 폴리에스터 60%) 인견받침	1벌	
40102	마춤신사복 (겨울용)	제일모직, 순모복지 (색쇼니) 52S/2 인견받침	"	
40103	마춤속녀복 (여름용)	선경직물, 스카이본디 합성직물 팔없는 원피스, 나이론다후다받침	"	
40104	마춤속녀복 (겨울용)	유성모직 (방모양장지 : 캐시미어) 울 100% 투피스, 비스코스받침	"	
40105	마춤코트	제일모직, 슈퍼코트, 남자용울 40%, 폴리에스터 60% 인견 받침	"	
40106	마춤오바	경남모직, 여자용 순모, 캐시미어 인견받침	"	
40107	기성신사복 (여름용)	울 40%, 폴리에스터 60% (삼성물산)	"	
40108	기성신사복 (겨울용)	울 40%, 폴리에스터 60% (삼성물산)	"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40109	한 복	성인 여자추동용, 코오롱양단 상 하 각각 2겹 보통마춤	1 벌	
40110	학 생 복 (여름용)	남자 중학생용, 상의는 TC(65 %폴리에스터 35%면), 하의는 T.R(50% 폴리에스터, 50% 레이온) 기성복 4호	"	
40111	학 생 복 (겨울용)	남자 중학생용, 에리트(제일합섬)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5%, 나이론다후다 발침, 기성복 4호, 후색	"	
40112	아 동 복	PAT제품, 상의T셔츠, 하의반바지 상하폴리에스터 50%, 면 50% (7-8세용)	"	
40113	잠 바	카시미아, 춘추용, 성인남자용, 작크부착, 긴팔, 나이론다후다 안발침, 기성복	1 매	
40114	긴 팔 와이셔어츠	남자성인용 (폴리에스터 65%, 면 35%) (상표지정)	"	
40115	반 팔 와이셔어츠	남자성인용 (폴리에스터 65%, 면 35%) (상표지정)	"	
40116	남방셔어츠	남자성인용 반소매 (폴리에스터 100%, 유색, 기성복)	"	
40117	면 내 의	남자성인용, 겨울용상 하 38S 무색 (상표지정)	1 벌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40118	화학사내의	남자성인용, 겨울용 상 하 유색 폴리아크릴 100% (상표지정)	1 벌	
40119	런닝셔츠	남자성인용, 반팔 38S 흰색, (상표지정)	1 매	
40201	광 목	면 16S × 16S 폭 88.9cm 표백 안된 것 (1마) (상표지정)	90.9cm	
40202	포 플 린	면 30S × 30S, 폭 111.76cm 나염 (상표지정)	90.9cm	
40203	이 불	실크 원단, 한일 샤넬 (2kg 정도) 2인용 (한일합섬)	1 장	
40204	나이론배피터	나이론 100%, 70 데니얼 폭44 인치 (111.76cm) 유색	90.9cm	
40205	재 봉 사	TC (폴리에스터 65%, 면 35%) 60S/3, 길이 5,000m 흰색 (상표지정)	1 권	
40206	화 학 사	비들기표 (태광산업), 아크릴 에 이스란 100%, 10S/2 원물용 유색	453.6g	
40207	습	면, 지대포장, 3kg들이, 흰색 (상표지정)	1 포	
40301	미춤남자구두	복수혁, 나이론창, 플라스틱굽, 검은색	1 켤레	
40302	미춤여자구두	복수혁, 나이론창, 프라스틱굽	"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규격	단위	비고
40303	남자고무신	말표, 흰색 260mm 은하수 (KS 표시품)	1켤레	
40304	여자고무신	말표, 흰색, 코백너 230mm (KS 표시품)	"	
40305	운동화	말표, 남학생용, 면직, 흑색, 스파이크형 230mm	"	
40306	비신	말표, 남자성인용, 반장화, 흑색 고무제품 260mm	"	
40307	비닐화	왕자표, 합성피혁, 고무창, 밤색 260mm	"	
40401	남자양말	성인용, 추동용, T/W(혼방사) (상표지정)	"	
40402	여자양말	추동용, 아크릴 60%, 나이론 40% 정도 (상표지정)	"	
40403	아동양말	추동용, 아크릴 60%, 나이론 40% 정도 (8~9세용), (상표지정)	"	
40404	스타킹	라보라, 살색 나이론 100% 밴드 (무늬, 뒷줄없음)	"	
40405	웨어퍼	소가죽(속피) 무쇠장식, 폭 4cm 정도	1개	
40406	장갑	면사 23S 흰색, 작업용 중품	1켤레	
40407	넥타이	폴리에스터 100% (상표지정)	1매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40408	머 플 리	남자성인용, 본건 40S 단사 (110 cm × 30 cm) 중품	1매	
40409	모 자	중고교생용, 울 70%, 나이론 30%, 방모사 나이론 안받침, PVC 챙	1개	
40410	가 방	남자중고학생용, 포직, 「품」자 표시품 (상표지정)	〃	
40411	모 포	한일합섬, 일반용 울런모포 바 닥은 면 30%, 아크릴 70% 170 cm × 220 cm	1매	
40412	수 건	면 23S, 80 cm × 32 cm 정도, 유 색 (상표지정)	〃	
40413	우 산	협립제품, 흙살 10개, 2단 데 드론, 검은색	1개	
40414	양 산	협립제품, 흙살 10개, 3단 (나이론 100%) 유색	〃	
40415	손 목시 계	오리엔트 21석, 남자용 자동, 날자, 요일, 방수, 방충, 스테인 레스케이스 국내조립품	〃	
40416	금 반 지	순금 (99%) 3.75g 무늬단 조 (수공임포함)	〃	
40417	핸 드 백	합성피혁제품, 최신중형 보통장식, 단색 (상표지정)	〃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40418	안 경	남자보안용, 국산테 (세루로이드 6mm), 수입알 (국내가공) 슈퍼 결갈색	1 개	
40501	양복세탁료	신사복 상, 하 드라이크리닝 (다림질포함)	1 회	
40502	와 이셔츠 세 탁 료	성인용 (다림질포함)	"	
40503	재 봉 료	부인용, 춘추용 한복 (화학사 옷감 3점), 수공임	1 벌	
40504	의복수선료	신사복, 짜집기 3cm 정도	1 회	
40505	실수선료	남자구두 1켤레, 뒷창수선료 (재료값 제외)	"	
40506	구두타이	남자용 단화, 검정색, 보통광택	"	
50101	영 양 제	빠콤 (유한양행) 100정들이	1 병	
50102	감 기 약	노바킹 당 의정 (동광약품) 10정들이	"	
50103	소 화 제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60정들이	"	
50104	항 생 제	테트라사이클린 (종근당 제약) 250 mg	10 캡슐	
50105	해독강장제	박카스 D (동아제약) 100cc 들이	1 병	
50106	구 충 제	버막스 (유한양행) 6정들이	1 갑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50107	외 상 약	마큐롬액 25cc 들이	1 병	
50108	진 찰 료	종합병원, 재진료, 의료보험수가	1 회	☆
50109	입 원 료	종합병원 보통실, 의료보험수가 (식사포함 약대제외)	1 일	☆
50110	분 만 료	종합병원, 2박3일 보통실입원, 경산, 정상분만 의료보험수가 (식사, 약대제외)	1 회	☆
50111	엑스레이 촬 영 료	종합병원, 흉부, 직접, 보통, 단 순촬영 (14인치×14인치) 의 료보험수가	"	☆
50112	인 삼	곡삼4 년근, 1 등품 50 편 300 ¢	1 상자	
50201	화 장 비 누	다이알비누 동산유지 100 ¢	1 개	
50202	세 탁 비 누	일반가정용, 4 호 550 ¢ (상표 지정)	1 개	
50203	가 루 비 누	럭키농축강력하이타이, 비닐포장 800 ¢ 들이	1 포	
50204	치 약	럭키치약, 100 ¢ 들이 (중형)	1 개	
50205	칫 술	럭키 777 성인용 (케이스포함)	"	
50206	화 장 크림	아모레 미보라 모이스란 크림 130 ¢ (태평양화학)	1 갑	
50207	화 장 분	아모레 미보라 웨이셜펙트 10 ¢ (태평양화학)	"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50208	화 장 수	쥬단학 새로본 모이스취 밀크로 손 140 ml (한국화장품)	1 병	
50209	포 마 드	단학팬담 G포마드 60 g (한국화장품)	1 갑	
50210	화 장 지	흰색, 원통형 두겹 30 cm 정도 (상표지정)	1 개	
50211	살 충 제	에프킬러 에어로졸 (삼성 제약) 수압분무식 420 ml 들이	1 통	
50212	면 도 날	도로코 (한일공업) 10매	1 갑	
50213	이 용 료	성인 (착유포함) 중류	1 회	
50214	고 데 료	성인여자 (가발, 캣트료 제외) 중류	"	
50215	파 마 료	성인여자, 보통파마 (B급) 중류	"	
50216	목욕료 (성인)	남자, 일반 대중탕	"	
50217	" (아동)	일반 대중탕 (7 세 이하)	"	
50301	시내버스료	성인, 시내 1 구간	"	
50302	시외버스료	포장도로, 일반여객	1 km	☆
50303	고속버스료	서울 - 각 도시간, 성인, 편도	1 회	☆
50304	택시료 (기본)	시내, 기본요금 (2 km)	"	
50305	" (초과)	2 km 초과요금	"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50306	기차료 (완행)	대인 40 km	1 회	☆
50307	" (급행)	대인, 보통급행 70 km	1 회	☆
50308	항 공 료	대한항공, 서울-도시간 성인편도	1 회	☆
50309	선 박 료	국내 여객 운임, 성인, 3 등실 20 해리	1 회	☆
50401	전화료 (기본)	가정용, 1 대, 시내통화료	1 개월	☆
50402	" (도수)	가정용, 시내통화료	200 회	☆
50403	우편료 (국내)	통상우편 1 종 (필서봉서, 20g 이내)	1 통	☆
50404	전 보 료	시의, 보통 10자 이내	1 회	☆
50405	우편료 (국제)	항공서간	1 통	☆
50501	국 민 학 교 교 과 서	4 학년 1 학기용, 국어, 산수, 사생, 자연	※	☆
50502	중학교교과서	영어 (중 2-1, 2-2), 수학 2	※	☆
50503	고 등 학 교 교 과 서	영어 I, II (민영빈의 4명) 수학 I (상, 하), 수학 II (신동 선의 3명)	※	☆
50504	국 민 학 교 육 성 회 비	가구당 1인 재학생분	1 개월	
50505	납입금 (공중)	2 학년생	1 분기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50506	납입금(사중)	2학년생	1분기	
50507	" (공고)	"	"	
50508	" (사고)	"	"	
50509	" (국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문과계 3학년생	1학기	
50510	" (사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문과계 3학년생	"	
50511	" (전문)	기계과 1학년생	"	
50512	유치원비	보육료 및 기성회비	1개월	
50513	참고서	엣센스영한사전(민중서관) 3× 6판 인도지, 비닐표지, 1,680페이지	1권	☆
50514	입시 학원비	대학 입시준비, 영어단과반 1일 100분강의 보통강사수강료	1개월	
50515	자동차학원비	지정자동차학원, 본과 영업반 8주과정 수강료(입학금, 책값, 면허수수료 제외)	"	
50516	양재 학원비	재단과, 4개월과정 수강료 (입학금 제외)	"	
50517	도서관비 (국공립)	성인, 일반 열람실	1회	
50518	도서관비 (사설)	학생, 일반 열람실	1일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50601	볼 펜	모나미 153, 청남색KS표시품	1 개	
50602	연 필	문화연필 뉴사파이어 HB향나무 (지우개부착)	1 다스	
50603	만 년 필	파일롯드 55G2형	1 개	
50604	노트(대)	중고등학생용, 1급3호 내지 40매 (신문용지 17.6 cm × 25 cm) (상표지정)	1 권	
50605	노트(소)	국민학생용, 3급2호 내지 20매 (신문용지 17.6 cm × 25 cm) (상표지정)	"	
50606	도 화 지	마니라지 (45.4 kg) 1면사용, 수채화용, 8절지	1 장	
50607	시 험 지	쟁지 16절지	20 장	
50608	봉 투	모조지제품, 흰색	10 장	
50609	크 레 파 스	18색, 크기 50 mm 정도 (상표지정)	1 갑	
50610	잉 크	청색, 파일롯프인크 30cc들이	1 병	
50701	신문구독료	한국일보, 가정배달	1 개월	☆
50702	주간지	주간한국	1 부	☆
50703	여성지	주부생활 (당월분)	1 권	☆
50704	매 중 지	샘 터 (당월분)	"	☆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50705	아 동 지	소년중앙 (당월분)	1 권	☆
50706	총 합 지	신동아 (당월분)	"	☆
50707	문 예 지	현대문학 (당월분)	"	☆
50708	영 화관람료 (방 화)	출천연색, 상영시간 100 분정도 입장세포함 (각종 구호금 제외)	1 회	
50709	영 화관람료 (의 화)	"	"	
50710	텔레비전 시 청 료	1 대	1 개월	☆
50711	고궁입장료	고궁 및 유원지, 성인	1 회	
50712	사 진	명함판, 흑백 3 - 4 매 (상류 사진판)	1 조	
50713	흑백 필름	대한필름 폭 35mm 20 장 촬영용	1 통	
50714	칼라 필름	코닥칼라C - II, 24 장 촬영용, 35mm 수입품	"	
50715	장 난 감	유색, 고무용, 직경 18cm 정도	1 개	
50716	삼륜 자전거	어린이 4 - 5 세용, 1인용, 보통장식	1 대	
50717	운 동 기 구	축구볼, 보급용 (중앙구), 소가 죽 32 피	1 개	

품목번호	품목명	품 질 규 격	단 위	비고
50718	레 코 드 판	LP형, 지름 30cm, 스테레오 국내 일류가수 신곡 최신취입	1 장	
50719	생 화	국화꽃 심성한 것 직경 5 - 6cm	1 송이	
50801	담 배	각종권련	1 갑	☆
50901	행정수수료 (주민등록초 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1 통	
50902	행정수수료 (호적초본)	호적초본 발급	"	
50903	행정수수료 (인감증명)	인감증명 발급	"	

II. 조사상 문제품목의 참고사항

- 쌀 : 상품과 중품을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대상처별로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계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 품질 규격을 조사할 것
- 어개류 : 생선의 길이에 상당하는 무게를 알아 두었다가 중량 단위로 판매하는 대상처의 올바른 가격을 포착할 것이며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중량을 중심으로 가격을 환산할 것
- 목장우유 : 협동조합에서 고정적으로 배달하여 주는 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며 제과점이나 일반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 미역 : 지역별 산지별로 가격이 상이하니 반드시 규격을 확인한 후에 조사할 것
- 마늘 : 규격에 맞는 적당 무게를 확인하여 조사할 것
예컨대, 3.75kg (1관)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적당 무게를 파악하고 있어야 환산이 가능함
- 과자류 : 항상 상표와 중량을 확인하여 조사할 것이며 특히 감량에 유의하여 그 사유 및 가격을 정확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 밀크 : 목장우유와는 구별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 약주 : 용기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병술을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 방세 : 방세조사의 대상은 방이므로 가구주의 변동이 있어도 대상처는 변동되지 않으며, 세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대상가구를 번

동하여서는 안된다.

예컨대 동일한 방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경우나, 전세가 월세(보증부월세, 삭월세, 월세)로 변경되어도 대상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변동된 사실을 그대로 기입하여 보고한다.

즉 A가 전세로 200,000 원에 세들어 있다가 전출하고 B가 250,000 원에 전세 입주하면, 조사표에는 가구주 성명을 B로 기입하고 50,000 원 인상된 것으로 보고 등락사유란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사실을 기입하며, 200,000 원 전세로 있던 A가 보증금 100,000 원에 월세 5,000 원으로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는 전세 200,000 원으로 기입하고, 금분기에는 보증부월세란에 보증금 100,000 원 매월 지불액 5,000 원으로 기입하고 등락사유란에 세의 종류변경을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비, 시설비, 기타 영선료 부과징수는 제외된다.

오물수거비 : 지방별로 1 등급(월수입, 재산세, 건평등 택일)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연 탄 : 가정용 소형 구멍탄으로서 직매점 점두가격을 조사한다.

배달료는 거리의 원근 및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가격에서는 제외된다.

남자구두 : 복수력이라 함은 인조합성 피혁이 아닌 우피를 말하며 기성화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비 실 : 단추나 작크가 부착되지 않은 반장화를 조사하여야 한다.

손목시계 : 남자용 오리엔트 21석으로서 요일과 날짜가 나오는 것으로
(카렌다형) 자동이며 국내 조립품을 조사한다.

금반지 : 순도 (99%)를 유지하며, 수공임을 포함하므로 단순한 무늬가
있는 것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수공임의 변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피복류 : 피복 및 장신구는 유행에 민감하므로 특히 상표, 원료의 성
분 (수, 데니엘, 혼방의 경우 혼합비율등) 색채, 형태 등에 항
상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수(手)와 데니엘(Denier)은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는
면직, 모직물에 데니엘은 생사, 나이론 직물에 사용된다.

수(S) : 면직물의 경우는 원면 1파운드(453.6kg)로 길이 840야드
(YDS)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하며, 모직물
의 경우는 1kg의 원모로 1,000m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
의 굵기를 말한다.

데니엘 : 나이론 섬유 1g으로 9,000m의 실을 뽑았을 때의 굵기를
말하며, 생사 450m 무게가 0.05g일때 1데니엘이라 한다.

이용료 : 종류라 함은 관광호텔 등의 특수 이발소가 아닌 일반 이발
소를 말하며, 보통의 착유를 포함하여 특수 서어비스 (손톱손
질, 맛사아지등)로 인한 팁은 해당 업소가 이용료에 포함시
킨다 하더라도 고려될 수 없다. 이하 미용료도 같다.

목욕료 : 터키탕, 사우나독크 등 특수 목욕탕이 아닌 일반 대중탕을 조
사대상으로 남자 목욕료를 조사하는데 특히 아동의 경우 7

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나, 지방에 따라 성인, 아동, 유아를 각각 구별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가장 가까운 요금을 조사한다.

예컨대 13세 이상을 성인, 6~12세까지가 아동 5세 이하가 유아로 구분되면, 유아의 목욕료를 조사하며, 10세 이상을 성인 5~9세까지가 아동, 4세 이하가 유아이면 아동의 목욕료를 조사한다.